

공공기관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



처분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

[쟁점]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판결]

공공기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지 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 두52980(2023년 7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법무법인 증부로 백혜원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사실관계와 1, 2심]

2019년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A씨는 4월 22일 처분을 통지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5일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5월 2일 공사로부터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A씨는 결국 7월 26일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해당 소의 제기 시점은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초과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

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20

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저작권자/법률신문)